##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99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 박홍배·송재봉·민병덕

이수진 • 윤준병 • 박정현

서미화 • 황명선 • 김한규

김현정 • 박 정 • 정진욱

김태선 • 이정헌 • 이광희

한준호 • 김 윤 • 이용우

이강일 • 전종덕 의원

(2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 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 가를 줄 수 있도록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소멸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쌓아놓고 근로자는 이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미사용보상휴가를 퇴직 시에 정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상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의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보상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휴가"를 "휴가(이하 "보상휴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방식, 적용대상,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보상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때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	제57조(보상 휴가제) ①
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	
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	
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u>휴가</u> 를 줄 수 있다.	<u>휴</u> 가(이하 "보상휴
	<u>가"라 한다)</u>
<u>&lt;신 설&gt;</u>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합의에
	는 보상휴가의 부여방식, 적용
	대상,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여
	<u>야 한다.</u>
<u>&lt;신 설&gt;</u>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사
	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
	지 않아 보상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